

5. 建設技術管理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921號 1995. 1. 5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구조물”을 “시설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 다.)” 다음에 “·설계감리”를 “공사감리” 다음에 “·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를 삽입하며, 동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호중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를 “건설분야의 기술계·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동조 제6호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발주청”으로 한다.

3의2. “설계등 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제3호의 설계기술 용역중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험·시설물의 유지·보수·철거

및 관리·사업관리와 구조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는 역무를 말한다.

3의3. “설계감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 제1항 각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제2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4항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로, “건설기술자에”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로 한다.

②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

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등을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업법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수첩에 당해 건설기술자의 근무기간·담당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보고의무) ①제6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하여 분기별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

- 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건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4.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건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5.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회수이상 받은 때
 8.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고 시공을 계속한 때
 9. 공사관리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10.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때

11.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12. 다른 행정기관으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장”을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기술자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 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을 “발주청은”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으로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설계등 용역업자들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 ①건설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야의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구조계산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한 때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때
6.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8. 제2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때

9. 신기술·신공법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설계등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 성과품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등 용역업자가 제20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설계등 용역의 참가제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7(하도급의 제한) ①설계등 용역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 등 용역을 다른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종별 하도급 범위·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제목중 “국가등”을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 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용역사업”을 “사업”으로,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를 “사업수행능력평가”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에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①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별 점을 줄 수 있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등 용역업자

4. 감리전문회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설계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감리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설계성과품이 부실하게 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의 지정기준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중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을 “발주청은”으로, “구조물”을 “시설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①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

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을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시험 또는 안전 점검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항 전단중 “허가”를 “허가·인가·승인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후단중 “허가 또는”을 “허가·인가·승인등을 하였거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중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을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으로 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을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을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중 “국가·지방자치단

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및 제5항중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1항중 “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27조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되, 동조 제4항 및 제5항(중전의 제3항 및 제4항)중 “제1항 본문”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5 및 제2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①건설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수첩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경력수첩으로 감리원수첩에

같음한다.

②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국가보안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5(감리원의 겸직 금지) 감리원은 그 소속 감리전문회사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6(감리원의 중복배치 금지) 감리

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을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서 2이상의 공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리원을 중복배치하더라도 책임감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3호중 “제104조의2”를 “제104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3년간 5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업무정지기간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5. 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7. 최근 1년간 동일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때
 8.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당해 건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때
 9. 2년이상 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1.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의 요청이 있는 때
- ②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5.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소속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7. 제28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2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한 때

③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④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중 “제30조 제1항”을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2.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 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7.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수첩을 대여한 때
 8. 제28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겸직할 때
 9. 다른 행정기관으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발주청은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감리의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건설부장관·철도청장·해운항만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설계기준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설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중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를 “발주청이”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품질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항목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6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8(시정명령)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장 및 제7장을 제7장 및 제8장으로 한다.

제6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6장에 제36조의9 내지 제36조의17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9(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①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건설시공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의10(협회의 회원)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6조의11(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중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2(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변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의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업무
6. 기타 건설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6조의13(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14(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

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의15(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건설부장관은 제36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6조의16(지도·감독등) 건설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7(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 본문중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정·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3중 “건설감리협회”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삽입한다.

제38조중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를 “외국도입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로 한다.

제39조 제1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협회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중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건설공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건설법중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
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2조제1호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중 “제28조 제1항 본문”
을 각각 “제28조 제1항”으로 하며, 동
조 제5호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4”
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제30조 제1항”
을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3
조 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
한에 위반한 자
2.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실측정 또는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제42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칙에 처한다.

1.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설계등 용역을 수주한
자

2. 제28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직
을 한 자
3.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
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자

제43조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중 “건설감리협회” 다음
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삽입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되, 동조 제3항(중전
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
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전의 제3
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
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
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②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
설기술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제44조중 “제41조 내지 제42조의2”를 “제
41조·제42조·42조의2 및 제42조의3”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

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

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개정이유◇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건설기술자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건설기술자에게는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제6조의2).
- 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등을 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시공 및 설계를 유도하도록 함(법 제6조의4).
- 다.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의3 및 제23조의2).
- 라. 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의2).

- 마.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21조의 3).
- 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의4).
- 사. 설계 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함(법 제22조).
- 아. 선진감리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감리를 추방하고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법 제27조 및 제28조).
- 자. 감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중복배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감리원을 업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법 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5·제28조의6·제30조 및 제33조).
- 차.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회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6조의9 내지 제36조의17) 〈법제처 제공〉

장인훈을 현장에 한국훈을 세계에